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출입국관리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법무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범위를 ‘직무능력개발지원 교육’ 및 ‘이주배경아동 보호자에 대한 학교생활 이해 등 교육’까지 확대하고, 체류자격 변경 시 제출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에 대한 관계기관 정보연계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, 첨단분야 최우수 인재의 국내 장기 정착 지원을 위해 방문동거(F-1) 체류자격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사회통합프로그램에 ‘직무능력개발지원 교육’ 및 ‘이주배경아동 보호자에 대한 학교생활 이해 등 교육’ 추가(안 제48조)

국내 체류 외국인의 직무역량 강화 교육과 이주배경아동 보호자의 한국 교육체계 및 학교생활 이해 제고를 위한 보호자 교육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, 사회통합프로그램에 ‘직무능력개발지원 교육’ 및 ‘이주배경아동 보호자에 대한 학교생활 이해 등 교육’을 추가하여 외국인의 사회통합에 기여하도록 함

나. 외국인 체류허가 심사 시 민원인의 일용근로소득 등 서류 제출 부담
완화(안 제88조의12)

거주(F-2)·영주(F-5) 등 체류자격 변경 시 민원인이 직접 제출하던
‘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’ 및 ‘간이지급명세서’에 대한 관계기관과의
정보연계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

다. 방문동거(F-1) 체류자격의 가사보조인 활동 범위를 확대(안 별표1의2)
방문동거(F-1) 체류자격의 가사보조인 활동 허용 범위를 첨단분야
최우수인재까지 확대하도록 함으로써 우수인재에 대한 지원 및 국가
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함

라. 방문취업(H-2) 체류자격의 활동 범위 확대(안 별표1의2)

제47차('25.5월) ‘외국인력정책위원회’에서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가
없고, 인력난을 겪는 산업 분야에 대해 방문취업(H-2) 체류자격 소지자의
취업 허용을 결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방문취업(H-2) 체류자격의
활동 범위를 확대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8조제1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직무능력개발지원 교육

4. 이주배경아동 보호자에 대한 학교 생활 이해 등 교육

제88조의12 중 “자료”를 “자료,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, 간이지급명세서”로 한다.

별표 1의2에 제23호5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표 제29호(2) 단서 중 “(92101)”을 “(92111), 화물 분류원(92120)”으로 하며, 같은 란 (나) 중 “(92111)”을 “(92111), 화물 분류원(92120)”으로 한다.

5) 거주(F-2) 자목 및 별표 1의3 영주(F-5) 제13호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8조(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 및 개발)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(이하 “사회통합 프로그램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구성한다.	제48조(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 및 개발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
1. · 2. (생 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3. <u>직무능력개발지원 교육</u>
<u><신 설></u>	4. <u>이주배경아동 보호자에 대한</u> <u>학교 생활 이해 등 교육</u>
3. (생 략)	5. (현행 제3호와 같음)
② ~ ⑦ (생 략)	② ~ ⑦ (현행과 같음)
제88조의12(소득금액 정보) 법 제78조제2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의 소득금액 정보”란 소득금액증명(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· 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을 말한다) <u>자료</u> 를 말한다.	제88조의12(소득금액 정보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자료,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, 간이지급명세서</u> ----- ---